

더 좋은 공공 서비스!

2021. 11. 1. ~ 11. 9.

보건소

2021 행정지도감사 결과

【 보건소 】

청렴  세상

기획감사실

- 목 차 -

I. 감사개요 및 결과

II. 지적사항 및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III. 감사 처분요구서

IV. 수범사항 및 주민감사관 보고서

V. 기타

- 주민감사관 간담회
- 수감부서직원 현지 교육

I. 감사개요 및 결과

감사개요

- 감사대상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 감사구분 : 행정지도감사
- 감사기간 : 2021. 11. 1. ~ 11. 9.(7일간)
 - ※ 코로나19 상황 고려 감사기간 단축: 당초 2021. 11. 1. ~ 11. 11.(9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18. 3. ~ 2021. 9.
- 감사대상 : 행정업무전반
 - 군정 주요시책, 민원, 보조사업, 공사추진 실태
 - 예산·회계, 세입·세출, 물품, 서무, 보안 등 업무처리 실태

감사결과

- 총지적건수 : 19건
 - ※ 보건행정과 15, 건강관리과 4
- 행정상 조치 : 19건 (시정 2, 주의 17)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없음
- 수감 우수 공무원 추천 : 보건행정과 행정7 김민우
건강관리과 간호8 박예찬

II. 처분계획

행정상 조치

번호	담당부서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계		19건 (시정2, 주의17)	
1	보건행정과 (15건)	시정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 기록물표지 씌우지 않고 보관
2		주의	당직 근무 소홀 - 재택 당직 시 자동경비 미실시
3		주의	물품관리업무 소홀 -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 불용처리 미실시
4		주의	약품 관리 소홀 - 재고량, 이월량 미일치 사유 미작성 등
5		주의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선물 등 구매 시 지급대장 작성 누락 등
6		주의	지출원 부재중 회계관직 대리 미지정 - 1일간, 27,570천원(14건)
7		주의	초과근무 사후명령 부적정 - 6건 1~3일 지연 결재 및 당직자 확인 누락
8		주의	2020년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업무처리 소홀 - 보조사업자가 입찰 진행 공사 건을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에 대해 미조치
9		주의	불필요한 서류의 징구 - 의료기간 개설신고증명서 등
10		주의	제증명수입, 진료수입 등 수입금 세입조치 소홀 - 222천원(7건), 4~13일 지연 납입

번호	담당부서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11		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업무 소홀 - 8천원(16회) 착오 감면
12		주의	건설공사 계약시 업종적용 부적정 - 바닥재교환공사에 대하여 시설물유지 관리업 업체가 아닌 건축공사업 업체와 계약(1건 21,900천원)
13		주의	공공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 공중보건의 숙소개보수공사에 대하여 세출예산과목 착오 집행(1건 1,790천원)
14		주의	건축 감리용역 준공검사 소홀 - 준공 부분 감리조서 제출 누락(1건)
15		주의	공사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2019년 24건, 2020년 27건 등
16	건강관리과 (4건)	시정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 기록물표지 씌우지 않고 보관
17		주의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보조사업 경비배분 변경 확인 소홀 - 사업계획서의 항목간 전용이 있었으나 관련 조치 없이 정산검사 후 보조금 확정
18		주의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선물 등 구매 시 지급대장 작성 누락 등
19		주의	유연근무자 출퇴근 등록 미실시 - 유연근무자 2명 지문인식 누락

Ⅲ. 감사 처분요구서

【 No 1 】

감사자 박준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현 황]

○ 기록물 관리소홀 현황

(단위:권)

연번	연도	건 명	수량	비고
계		5건	10	
1	2019	영양플러스 사업	3	
2	2020	영양플러스 사업	3	
3	2018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1	
4	2019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1	
5	2020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2	

【위법부당내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

며,

- 같은 법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록물의 정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계획」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별표 2(별첨)의 기록물철 표지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그 기록물철의 표지로 사용하여 편철 후 보존용표지를 씌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총 10권 기록물에 대하여 법정 기록물철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등 공공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해당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표지를 씌워 보관하여 주시고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기록물철 표지

[시행규칙 별표 제2호서식]

단위과제명-과제카드명
[부제목 : 원하는 철제목]
생산연도(시작연도/종료연도)
처리과(보존기간)

※ 210mm×297mm (보존용지 1,2종 70) : A4 세로 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 근무 소홀

[현 황]

연번	근무일	무인경비시스템		당직근무자		비고
		OPEN	CLOSE	직급	성명	
	5건					
1	2018.4.29.	08:19	-	간호7	김신영	경비미실시
2	2020.6.27.	08:20	-	보건8	이원규	경비미실시
3	2020.6.28.	-	-	간호7	전미애	경비미실시
4	2020.12.27.	08:26	-	보건8	박지현	경비미실시
5	2021.1.1.	08:26	-	보건8	홍지영	경비미실시

※ 2018. 4. ~ 2021. 1. 보안업체(캡스) 자료 재구성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하면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당직의 구분) 및 제13조(당직

근무자의 일반업무)에 의하면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고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에 준하고, 당직자는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무인경비 시스템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당직자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당직 근무를 하면서 총 5회 자동경비 미실시 하는 등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물품관리업무 소홀

[현 황]

○ 연도별 불용처분 실적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	실시 횟수	건수	실시 횟수	건수	실시 횟수	건수	실시 횟수	건수
		2	523	2	102	3	292	2

○ 사용할 수 없는 물품(47개, 물품등록대장 등록)

(단위 : 개)

분류번호	물품명	보유 수량	비고	분류번호	물품명	보유 수량	비고
24121501	냉장냉동겸용장치	1		49211809	신체측정용도구	1	
30181516	사우나기	1		56101515	침대	5	
41103906	냉장플로어원심분리기	1		56112102	작업용의자	27	
42181602	전자혈압계	1		56121505	수강용탁자	3	
42251698	범용전기진동기	6		42181904	멀티파라미터바이탈사 인장치또는엑세서리	1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는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9월) 이상 실시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8조에는 불용 결정한 물품으로서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약품 관리 소홀

[현 황]

○ 2019~2020년 약품 관리소홀 현황

(단위: 개)

연번	약품명	2019년 12월 재고량	2020년 1월 이월량	증감	비고
계	5종	2,056	1,451	605	
1	경방구미강활탕 12.03g	776	529	247	
2	경방보중익기탕 6.18g	347	277	70	
3	경방오적산 13.08g	436	370	66	
4	경방향사평위산 8.64g	167	103	64	
5	경방황련해독탕 5.64g	330	172	158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제2조(관리책임), 제15조(잔품의 이월), 제20조(보관책임) 등에 의하면,

-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하며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2019~2020년 한방진료실 약품소모품대장의 경방구미강활탕 12.03g 외 4종의 약품에 대하여 2019년 12월 재고량과 2020년 1월 이월량이 상이함에도 별도 그 사유를 표기하지 않았고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약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현 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연도	내역	지출일자	금액(원)	비고
계		5건		7,036,240	
1	2018	보건의 날 체육대회 직원간식제공(구입)	2018.4.7.	965,540	
2	2018	보건소 단합대회 간식 및 급식제공	2018.10.27.	2,086,700	
3	2019	2019년 하반기 보건소 전직원 단합대회 관련 간식 제공	2019.10.26.	140,000	
4	2019	2019년 하반기 보건소 전직원 단합대회 관련 회식 제공	2019.10.26.	2,135,000	
5	2020	2020년 보건행정과 전직원 단합대회 회식 제공	2020.11.15.	1,709,000	

○ 업무추진비 격려품 등 구입내역

연번	통계목	내역	지출일자	금액(원)	비고
계		5건		1,358,000	
1	2019	옥천군,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과의 업무협약식 기념품 구입	2019.8.8.	112,000	
2	2021	내방객 제공용 지역특산품 구입(2-다)	2021.6.17.	350,000	
3	2021	소속 비상근무 직원 격려 물품 제공(6-바)	2021.3.24.	256,000	
4	2021	소속 비상근무 직원 격려 물품 제공(6-바)	2021.3.25.	560,000	
5	2021	소속 비상근무 직원 격려 물품 제공(6-바)	2021.3.29.	80,00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후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경비이며,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집행하였고, 총 5건의 격려품을 구입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원 부재중 회계관직 대리 미지정

[현 황]

- 지출원 대리 미지정 지출현황(별첨)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항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고 되어있고
-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항에 의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상기와 같이 지출원이 관외출장 중에 회계관직 대리지정 없이 지출원 명의로 총 14건 27,570천원의 세출예산을 집행

[처 분 요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지출원 대리 미지정 지출현황

연번	지출원 부재일	적요	집행금액(원)	지출 승인	지출원 대리 지정 여부
계		14건	27,570,310		
1	2018.3.19.	보건진료소(개심, 국원) 냉난방기 조달 구매(설치)	7,833,770	지출원	부
2	2018.3.19.	치매정밀검진비 지급(2월)	1,487,790	지출원	부
3	2018.3.19.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개인정보동의서 외 4종) 제작	1,320,000	지출원	부
4	2018.3.19.	암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석 관외여비 지급	72,000	지출원	부
5	2018.3.19.	암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석 여비 지급	144,000	지출원	부
6	2018.3.19.	2018년 2월분 신용카드 수수료 지급	19,530	지출원	부
7	2018.3.19.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신체활동 강사 수당 지급(2월)	11,610,000	지출원	부
8	2018.3.19.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신체활동(건강 점프교실) 강사수당 지급(2월)	300,000	지출원	부
9	2018.3.19.	증약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1차)	1,673,820	지출원	부
10	2018.3.19.	도곡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1차)	1,986,900	지출원	부
11	2018.3.19.	도곡보건진료소 2018년 1차 정기 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120,000	지출원	부
12	2018.3.19.	도곡보건진료소 청소용품 구입	196,100	지출원	부
13	2018.3.19.	동대보건진료소 모터 수리(해빙)	173,000	지출원	부
14	2018.3.19.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 구입(A형간염)	633,400	지출원	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초과근무 사후명령 부적정

[현 황]

○ 2019~2021년도 사후명령 결재현황

연번	결재일	초과근무일	당직자확인여부	결재지연일
계			11건	6건(1~3일)
1	2021.9.23.	2021.9.19.	부	
2	2021.9.6.	2021.9.5.	부	
3	2021.7.27.	2021.7.24.	부	1일
4	2020.12.7.	2020.12.5.	부	
5	2020.9.14.	2020.9.12.	부	
6	2020.7.8.	2020.7.4.	부	2일
7	2020.6.30.	2020.6.28.	부	1일
8	2019.6.19.	2019.6.16.	부	2일
9	2019.6.18.	2019.6.15.	부	1일
10	2019.6.10.	2019.6.2.	부	
11	2019.2.12.	2019.2.2.	부	3일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VI. 초과근무수당 등,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초과근무 사후명령 11건에 대하여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누락하였고, 당직근무를 종료하고, 초과근무 사후명령 결재 시 6건에 대하여 1~3일 지연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2020년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업무처리 소홀

[현 황]

○ 사업 내역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정산검사일	보조금 (천원)	비고
2020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00이비인후과 의원장 000	2021.2.26.	100,00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그리고 보건소 보건행정과-26129호(2020.11.5.)의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표1]과 같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공사 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자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후 보조금을 집행하였음에도 이상 없는 것으로 정산 검사하고 보조금을 확정된 사실이 있음.

[표1]

연도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수행자	보조금 집행일	사업비 (천원)
2020	호흡기 클리닉 설치 공사	자동도어, 냉난방기, 음압기, 양압기 설치 등	기업(주) 그000텍	2021.1.15.	100,000

[처 분 요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불필요한 서류 징구

[현 황]

○ 불필요한 서류 요구 현황

민원명	민원인	일자	징구서류	비고
의료시설 개설신고	박00	2021.9.6	-의료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의료시설 개설신고	최00	2021.7.29.	-의료면허증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박00	2021.7.14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위법부당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에는 “행정기간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3호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시설 개설 신청을 받으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서류(면허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였음.

[처 분 요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제증명수입, 진료수입 등 수입금 세입조치 소홀

[현 황]

(단위 : 원)

발생일자	세입과목	금액	정당 납입일자	실제 납입일자	납입 지연일수	비고
계	7 건	222,920				
2018.4.10	진료수입	213,920	2018.4.11.	2018.4.16	5	
2018.8.20	진료수입	900	2018.8.21	2018.8.27	7	
2018.11.13	진료수입	1,800	2018.11.14	2018.11.22	8	
2018.11.16	진료수입	900	2018.11.17	2018.11.22	13	
2019.8.2	진료수입	900	2020.8.5.	2019.8.9	4	
2020.3.11	진료수입	2,700	2020.3.12.	2020.3.20	8	
2020.9.11	진료수입	1,800	2020.9.14	2020.9.24	10	

【위법부당내용】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

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진료수입, 제증명 수입 등을 징수하되,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규정을 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서는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금을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료수입, 제증명 수입 등 수입금이 수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2020.07.21)]」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여 세입 금액의 성질에 따라 세입예산의 과목을 장·관·항·목별로 세부 분류하여 수입금이 수납된 그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 보건소에서는 2018년 4월 10일자 진료 수입 213,920원 외 6건 총 7건 222,920원의 수입금에 대하여 정당 납일일자보다 4일 ~ 13일간 지연 납입하는 등 진료수입 수입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요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업무 소홀

[현 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감면사유	감면내역		비고
					건수	감면금액	
계	1명				16	8,000	
1	정00	490201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00번길 52	65세이상 지원	16	8,000	

【위법부당내용】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

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는 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환자의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 예방접종,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진료수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진료수가로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항 2호에서 옥천군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주소지를 타지방자치단체로 이사한 후에도 16회에 걸쳐 진료를 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8,000원을 감면해 주는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요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건설공사 계약시 업종적용 부적정

[현 황]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일	사업내용	업종선정		계약상대자	
					계약시	정상업종	업체명	대표자
옥천군보건소 운동처방실 내부시설공사	수의 계약	21,90	2019.4.12	바닥재 교환	종합건설업 (건축공사 업)	전문건설업 (실내건축 공사업)	수○건설	박○○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며,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 등)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를 명확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함에도,
 -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운동처방실 내부시설공사의 사업내용이 내부시설의 바닥재교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2019.4.12.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수○건설과 21,900,000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공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설계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지출)
안남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개보수공사	5,890	2020.3.26	2020.3.27	2020.4.9	**하우징 박**	시설비 4,100 공공운영비 1,79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목)에는 공공요금 및 세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를 편성·집행하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2-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요소 충당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

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1)또는 시설비(401-1)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옥천보건소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목적 대로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안남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개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설비(4,100천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공운영비(201-2)에서 1,790천원을 세출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건축 감리용역 준공검사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옥천군 치매안심센터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13,748	2018.8.21	2018.8.24	2019.6.5	****사무소 김**	
은행보건진료소 신축공사(건축)감리용역	4,887	2019.12.26	2019.12.27	2020.6.25	****사무소 강**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에 의하면 용역 완성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 옥천군 치매안심센터신축공사 감리용역외1건의 과업이행요청서 “Ⅱ. 세부과업 지시사항 5. 공사 완공단계”에 의하면 준공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하고 발주청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 부분 감리조서(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보건소에서는 옥천군 치매안심센터신축공사 감리용역외 1건을 추진하면서 준공신고서 제출시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준공 부분 감리조서를 제출 받지 않고 시정조치 없이 감리용역 준공검사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노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사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현 황]

- 도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외 42건 (첨부내역 별첨)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각종 공사가 완료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최종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 보건소에서는 공사 준공 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

사에 대하여 2018년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2건), 2019년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24건), 2020년 상반기(27건), 최종 하자검사(20건)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정기·최종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현 황]

- 공공기록물 관리소홀 현황

(단위:권)

연번	연도	건 명	수량	비고
계		5건	10	
1	2019	영양플러스 사업	3	
2	2020	영양플러스 사업	3	
3	2018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1	
4	2019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1	
5	2020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2	

【위법부당내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록물의 정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계획」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별표 2(별첨)의 기록물철 표지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그 기록물철의 표지로 사용하여 편철 후 보존용표지를 씌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총 10권 기록물에 대하여 법정 기록물철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등 공공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2018~2019년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보조사업 경비
배분 변경 확인 소홀

[현 황]

연번	연도	사업명	정산 검사일	보조금 확정액(원)	비고
계		2건		33,656,600	
1	2018	제16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2019.2.7.	16,656,600	
2	2019	제17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2020.1.13.	17,000,000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제2항에 의하면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경비의 배분이 변경된 2018~2019년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보조사업에 대하여,
-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경비의 배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으로 자체 판단하여 정산 검사를 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현 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연도	내역	지출일자	금액(원)	비고
계		2건		2,365,000	
1	2019	2019년 하반기 보건소 전직원 단합대회 관련 회식 제공	2019.10.26.	1,085,000	
2	2020	2020년 보건소 건강관리과 단합대회 관련 회식 제공	2020.11.21.	1,280,000	

○ 업무추진비 격려품 등 구입내역

연번	통계목	내역	지출일자	금액(원)	비고
계		3건		718,000	
1	201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4-마)	2019.8.8.	112,000	
2	2021	2021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품 구입	2021.6.17.	350,000	
3	2021	2021년 직원 사기양양을 위한 격려품 구입	2021.3.24.	256,00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후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경비이며,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집행하였고, 총 3건의 격려품을 구입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1년 보건소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옥천군 감사반장 박 노 경 (인)

[기 관 명] 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유연근무자 출퇴근 등록 미실시

[현 황]

○ 2019~2021년 유연근무자 출퇴근 등록 미실시 현황

연도	유연근무제	부서	직	성명	출퇴근 등록미실시 횟수
계				3명	25회
2021	2021.3.19.~2021.12.31. (월~금: 09:00~17:00)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방시간 선택제임 기제마감	이혜인	5 (5.21. 6.1. 7.1. 7.5. 7.7.)
2020	2020.5.18.~2020.12.31. (월~금: 09:00~17:00)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방시간 선택제임 기제마감	김혜정	16 (5.20. 5.21. 6.17. 6.19. 6.1. 9.1.~9.16.)
2019	2019.7.22.~2019.12.31. (금: 09:00~12:00)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방시간 선택제임 기제마감	김혜정	4 (8.9. 8.23. 11.1. 11.8.)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및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의하면,

-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라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그러나,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2019부터 2021까지 이해인 외 1명은 총 25회 출퇴근 등록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